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36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4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8
3. 주요항목별 검토	11
(1) 총칙에 관한 사항	11
(2)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15
(3)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	21
(4) 결격사유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3
(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25
(6) 생산 전력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27
(7) 비용 감면 및 송·배전설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9

(8)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1
(9) 기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4
(10) 매립농지에서의 설치 특례에 관한 사항	37
(11)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9
(12)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농지의 임차인 보호에 관한 사항	41
(13)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사항	4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22인

나. 제 안 일 : 2024. 6. 20.

다. 회 부 일 : 2024. 6. 21.

II. 제안이유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되며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 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보급을 활성화시켜 농가 소득을 높이고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인당 발전설비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

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승인대상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인으로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민참여
조합이어야 함(안 제4조).

마. 영농태양광시설에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

바.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의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송전·배전 시설 지원, 기술개발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

자. 영농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지자체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함(안 제18조).

타. 영농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안 제20조)

파. 임대인은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21조).

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해야 함(안 제2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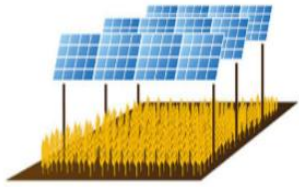
IV. 검토의견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제정안은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이 기존의 외지인 주도에서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들이 농지를 영농활동에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당 농지에서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영농태양광(또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 식물은 일정량의 일조량(광포화점)을 넘어서면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만큼, 광합성에 사용되지 않는 태양광을 발전과 공유하는 것이 이론적 배경임.¹⁾

【 영농태양광 예시 등 】

	〈그림 2-2〉 농촌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 예시 〈농촌형 태양광 예시〉  〈영농형 태양광 예시〉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사업지	농촌형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의 차이점 예시²⁾

1) 정학균 등,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p.12.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으로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농업인의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면서, 현재 영농태양광 발전은 세계 곳곳에서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이 진행되는 등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가령 프랑스의 경우, 보르도 지역의 포도밭·가르 지역의 벼 재배지 등에서 영농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실증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근거법령으로서 「재생에너지촉진법」(2023), 「영농형 태양광 촉진 등에 관한 총리령」(2024) 등을 제정하면서, 점차 영농태양광 발전의 도입이 촉진되고 있음.³⁾

우리나라 역시 2016년에 한 업체가 충북 오창에서 논·밭에 각각 15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벼와 배추를 재배한 이후, 다수 업체 및 기관의 시범단지 구축을 통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의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⁴⁾

다만,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에서 영농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농지법」상 농지전용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제도와 「전기사업법」 등 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용되고 있어, 영농태양광 발전만을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2) 정학균 등, 위의 책, p.13.

3) 안지원,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 「현안, 외국에선?」 2024-16호, 국회도서관, 2024. pp.1~2.

4) 정학균 등, 앞의 책, p.15.

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도시 밀집도가 높아 많은 양의 태양광을 수집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의 토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농지는 대부분 일조량이 좋은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영농활동과 병행하는 영농태양광 발전의 경우 전력생산의 효율성이 높다는 점,

일상화된 기후위기와 가축 감염병 확산, 농촌 고령화 등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가소득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2030년 NDC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⁵⁾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활용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농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임.

반면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경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대규모의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영농태양광 발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농업인 주도가 아닌 기업 중심의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태양광 발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영농태양광 발전에 관한 실증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며, 산업통상자원부가 RPS 제도⁶⁾⁷⁾를 전면개편하는 것을 검토하는 상황이므로, 영농태양광 발전에 대한 각종 정책적 지원을 담은 별도의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률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총 2건이 회부되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에 있었는데, 이는 각각 i)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770), ii)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127)이었고, 두 건 모두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2024. 5. 29.)되었음.

6)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이때 공급의무자는 동조 제5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가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공급의무량을 충당할 수도 있음.

7)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 중 하나는 전력시장에서 REC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으로, RPS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 규정을 통해 REC 수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RPS 제도 개편에 따라 REC 수요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이 발생하여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 역시 변화할 수 있음. 따라서 RPS 제도의 개편 내용에 따라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성이 변화할 수 있음.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본칙 총 6장, 25개의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제1장에서 동 법률의 목적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용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의한 다음, 제2장에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승인 취소, 인·허가 의제, 결격사유 및 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3장에서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태조사, 정책자금 지원·관리, 전기 우선구매, 발전설비 및 송·배전설비 등 비용감면, 컨설팅 지원, 영농태양광발전지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4장에서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활용되는 농지의 임차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 및 제6장에서는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

조번호	조 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입법목적 규정
제2조	정의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 등 용어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름
제2장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의 승인 등		
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요건, 승인기간, 필요한 서류 등
제5조	인·허가 등의 의제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타법상 인·허가 의제
제6조	결격사유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제7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승인·신고제 및 그 절차
제8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 사업계획 승인의 필요적·임의적 취소사유
제9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발전설비·재배작물 등
제3장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	실태조사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등
제11조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등 정책자금 운영·지원 시책 마련 등
제12조	전기구매 등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기의 우선구매 등
제13조	비용의 감면	- 발전설비 설치 및 송·배전설비 연결 등에 따르는 비용 등의 감면
제14조	시범사업 추진	- 영농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
제15조	컨설팅 등의 지원	- 컨설팅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예산 범위 내 지원

조번호	조 제목	주요 내용
제16조	송·배전설비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송배전설비 건설·운영·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송·배전설비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 마련 의무 - 지방자치단체의 송·배전설비 등의 설치 요청
제17조	영농태양광발전지구의 지정	-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조성계획 등
제18조	매립농지에서의 태양광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 매립농지에서 전기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 에너지 발전설비를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
제19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 및 지원
제20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등	- 영농태양광설비 설치지역 주민의 발전사업 참여 등

제4장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농지의 임차인 보호 등

제21조	발전사업 농지의 임대차 계약	-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분을 임대차계약 시 고려
제22조	국가 등 소유 매립농지에서의 수익 배분에 관한 특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 발전수익의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

제5장 보칙

제23조	감독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감독 등
------	----	---

제6장 벌칙

제24조	벌칙	- 사업계획 승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한 벌칙
제25조	과태료	-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 칙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

이하에서는 제정안 입법 시 논의되어야 할 주요 세부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3. 주요항목별 검토

(1) 총칙에 관한 사항

제정안은 법률의 목적을 제시하고, 법률에서 사용되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용어를 정의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조 및 제3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말한다.
4.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업인이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로 보며, 농지에 설치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농업생산보조시설로 본다.
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목적 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제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당해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촌, 농업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제정안 전체에서 법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각 용어 정의에 대한 입법적 필요성이 있음.

다만,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사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첫째, 제정안은 ‘농업인’의 정의를 「농지법」 상의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 농업법 체계에서 농업인에 관하여 정의하는 법률로는 「농지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농업법 체계에서 농업인에 관한 정의 】

구분	농지법 (법 제2조제2호, 시행령 제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 제3조제2호, 시행령 제3조)
공통점	1.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차이점	1. 농지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 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경 작하는 자 2. 일정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거 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1.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 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 속하여 고용된 사람

관련하여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이었던 두 건의 법률안⁸⁾에서 위성곤의원안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업인 정의(단,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다)를, 김승남의원안은 「농지법」의 농업인 정의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둘째,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정의하면서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농지법」상의 농지로 보는 한편, 농지에 설치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농업생산보조시설로 보고 있음. 이는 발전사업이 수

8)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770) 및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127)

9) 제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2024. 8. 13.) 위성곤의원안(의안번호 2202801) 역시 동일함.

행됨에 따라 해당 토지의 「농지법」상의 농지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생각됨.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법 체계에서 ‘농업생산보조시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바, 용어 해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다른 적절한 용어로 대체하거나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발전사업 중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어느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임.

(2)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승인제도를 운영하여 사업주체를 발전설비 소재지에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된 농업인 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민참여조합으로 한정하고, 사업 승인기간을 20년 이내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7조).

제 정 안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로 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이 되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된 자로서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업인일 것 2.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이하 “주민참여조합”이라 한다)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제5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은 제외한다)에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승인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 변경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 주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를 해당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된 농업인 또는 주민참여조합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 주도로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또한 제정안 제4조제1항제1호는 농업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차농 등을 배제하고 오직 자경농에게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생각됨.

제정안이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현행 제도상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이 자경농에게만 허용되고 있는바,¹⁰⁾ 두 취지 모두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우선, 일정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된 농업인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지적될 수 있어 보임. 첫째, 거주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거주기간이 짧은 귀농인의 사업 진입이 제한될 수 있음. 거주기간 제한은 외지인의 사업 진입을 저지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거주기간이 짧은 귀농인의 사업 진입 역시 제한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특히 초기 농업소득이 비교적 낮은 귀농인들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제한될 경우 농업인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주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둘째는 제정안에서 농업인 자격 유지의 증명을 위한 서류의 예시로 들고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적절성 여부임.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¹¹⁾은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발급받는

10)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자경농)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임차농 등의 참여주체 확대 여부는 추후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11)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

것으로서, 농지를 새로 취득하지 않더라도 농업인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증명서류로 활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음.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자격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2)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주민참여조합의 경우에는 농업인 외의 주민도 주민참여조합을 통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사업주체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음.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농업인이 발전수익의 수혜자가 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업인 외의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조합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한편, 두 가지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내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역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¹³⁾으로서, 사업 주체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¹⁴⁾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사업 주체의 요건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하여 현재 제정안에서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의 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안 제3조제2항¹⁵⁾에 따라 「전기사업법」상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계획이 승인되더라도 별도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업 승인기간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승인기간을 20년 이내로 설정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통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에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통하여 현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최대 8년으로 규정되어

13)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14)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5) 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최대 2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므로,¹⁶⁾ 제정안의 사업 승인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연장계획에 비하여 3년 더 짧은 기간(최대 20년)을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6)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2024. 4. 23.

(3)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다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 허가, 신고(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정안은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인가·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등 총 5개의 인·허가가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인·허가 의제는 창구 단일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로써, 제정안을 통해 농업인 등이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사전 절차를 수행하기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인·허가 의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24조¹⁷⁾는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15일)보다 긴 협의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허가를 의제하고 있지 않아 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의 허가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 관련하여 제21대 국회 및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위성곤의원안(의안번호 2108770 및 2202801)에서는 이를 의제한 바 있음.

17)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4) 결격사유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계획승인과 관련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3년 연속으로 농작물 수확량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8조).

제 정 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4.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65세 이상의 노령,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등의 수확량에 3년 연속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제 정 안

6.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상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정안은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을 허용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됨. 그렇다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관하여 결격사유나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규정함으로써 제정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승인 취소사유 중 제5호의 수확량 미달 사유와 관련하여 농작물 수확량은 기준 마련 및 실적점검이 어려워 이를 승인 취소사유로 규정할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정안은 사용금지 자재 및 재배금지 작물 등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를 사용하여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특정 농작물(식량작물 등) 외의 작물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제로 사업 모델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생각됨.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지를 보전하고 성실한 영농활동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모델이므로, 제정안과 같이 준수사항을 두어 그 기본 형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전설비 설치 및 재배작물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은 탄력적 규정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이 아닌 고시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실증연구 결과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임.

(6) 생산 전력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제정안은 정부에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우선구매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공공기관에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선구매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전기구매 등) ① 정부는 제4조에 따라 승인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4조에 따라 승인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선구매함으로써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의 안정적 수익 확보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우선구매 제도의 마련을 통해서 농업인 소득증대라는 제정안의 입법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수요 창출·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 등 일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특정 생산자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입법례는 다수 존재하는 상황임.

【 특정 생산자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입법례 】

법률	우선구매 대상		정책 목적
	대상 생산자	대상 생산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자	기술개발제품	수요 창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	수요 창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기술 전승자	전승공예품	전승활성화 및 수요 창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여성기업제품	여성기업활동 지원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 발전원의 우선구매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장기 수용성 제고 관점에서 시장원칙의 예외를 최소화하고 있는 현재의 전력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혼합된 전기를 구매하므로 현실적으로 특정 발전원을 구분하여 전기를 우선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제정안의 우선구매 제도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7) 비용 감면 및 송·배전설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송·배전설비 등에 따르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용·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설치를 요청하는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6조).

제 정 안
제13조(비용의 감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발전설비 설치 및 송·배전설비 연결 등에 따르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6조(송·배전설비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송·배전설비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중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한 송·배전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단순히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하여 생산해낸 전기를 판매하고 REC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송·배전¹⁸⁾설비를 통해 전력계통¹⁹⁾에 연계하는 작업 역시 요구됨.

18) 송전은 ‘발전소에서 배전용 변전소까지의 전력수송’을, 배전은 ‘배전용 변전소에서 가정까지의 전력수송’을 의미함.(한국전력공사 전력용어사전)

이때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송·배전설비 이용신청·계약을 하고, 자신의 전기설비를 송·배전용 설비에 연결하여 접속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전접속공사비²⁰⁾ 등을 부담할 수 있음.

제정안은 이와 관련하여 비용을 감면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송·배전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사업 초기단계에서 원활하게 사업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을 감경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만 송·배전설비에 관한 비용을 감면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제20조²¹⁾ 및 제21조²²⁾에 따른 송·배전설비의 차별적 이용금지 및 부당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제정안에 대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19)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서는 전력계통을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전력용어사전에서는 전력계통을 전기를 생산하여 수용가까지 공급하는 설비로, 발전설비와 송전·변전·배전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으로 소개하고 있음.

20) 한국전력공사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4. “배전접속공사비”라 함은 고객이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접속설비의 설치 및 공용배전설비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제68조(배전접속공사비 부담의 기본원칙) ① 고객이 새로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사유로 배전용전기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배전접속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21) 「전기사업법」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전기사업법」 제21조(금지 행위)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8)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제정안은 개별 입지에 의한 난개발과 경관 훼손의 문제의 방지 및 계통연결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 정 안

제17조(영농태양광발전지구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양광발전사업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지역주민, 농업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농태양발전지구²³⁾의 지정·변경,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관보의 게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개별 입지에 영농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재할 경우 발생하는 농촌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이라는 가치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라는 제정안의 목적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규모화된 사업지구 조성을 통해 계통연결을 효율화하여 생산된 전기를 원활하게 판매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중 재생에너지지구²⁴⁾가 제정안의 영농태양광발전지구와 특성과 취지 등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해당 재생에너지지구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통한 집적화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나, 현재 시행중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생에너지지구가 태양광발전만을 다루고 있는 영농태양광발전지구보다는 더 많은 종류의 재생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23) ‘영농태양발전지구’를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2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①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재생에너지지구: 에너지원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지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만큼, 현행 재생에너지지구를 보다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별 재생에너지 보급 상황 및 여건, 인·허가 관련 규제 및 전력계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마련한 후에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기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정책자금·시범사업·컨설팅·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

제 정 안
제10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책자금의 지원·관리)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시범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 정 안

제15조(컨설팅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컨설팅 등을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적정 작물 연구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재배기술 개발
3. 그 밖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 자료·통계들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정책자금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사업 초기 시설·설비 설치를 위한 융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생각됨.

이미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농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²⁵⁾에서 농업 정책자금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역시 자경농을 주축으로 농가소득 제고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융자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을 규정하려는 제정안의 취지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타 지원사항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시범사업 추진·컨설팅 지원·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사업구조·연구개발 등 개별 사업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2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①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매립농지에서의 설치 특례에 관한 사항

제정안은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에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오직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 정 안
제18조(매립농지에서의 태양광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에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한다.

제정안은 공유수면매립지²⁶⁾에서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함으로써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매립농지 중 토양염도가 높지 않아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농업생산성이 높은 농지는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자체가 금지되고 있으며,

높은 토양염도로 농업생산성이 낮은 염해간척지 등의 경우 농업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만을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경제성·수용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해양수산부는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²⁷⁾에서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매립농지에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제한규정을 지킴으로써 안정적인 공유수면 관리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제정안 제18조의 제목은 “매립농지에서의 태양광 설치에 관한 특례”인데, 본문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매립지 중 농지 외의 토지도 규제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검토 및 자구 수정 등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매립면허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1)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제정안은 영농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등으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 정 안
제20조(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등) ① 영농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조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4조제1항에서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로서 i)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업인 외에도 ii) 주민참여조합을 규정하여 농업인 외의 주민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서, 주민참여조합에게도 발전사업자 지위를 인정한다면 그 참여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외의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조합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당해 조항 역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²⁸⁾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만 별도로 주민 참여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 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

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 ②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12)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농지의 임차인 보호에 관한 사항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와 관련하여 해당 농지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2조).

제 정 안
제21조(발전사업 농지의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농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 등 소유 매립농지에서의 수익 배분에 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의 배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항에 관련하여, 농작물의 생장은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일조량은 농작물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임. 그런데, 영농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에서는 태양광 패널 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일조량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농작물 수확량의 감소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임대차계약 시 고려하는 등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일면이 있어 보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자경농)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임차농 등의 참여주체 확대 여부는 추후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검토할 사안이며,

참여주체가 확대되더라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인간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임.

국가 등 소유 매립농지에서의 수익 배분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 수익을 모두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지 혹은 임차인 등에게 수익을 배분하는지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등이 소유한 매립농지의 경우 경제성·사업규모·주민요구사항 등 지역별 추진여건이 상이하여 배분 비율 등을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수익 등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배분 비율 외 별도의 방식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3)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사항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의 벌칙을 부과하는 한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

제 정 안
제23조(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벌칙) 제4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한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

제 정 안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감독 규정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제8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을 승인취소 사유로 두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때 감독을 위해서는 시설에 관한 보고·자료제출·현장조사·장부 등의 검사 등의 행정조사²⁹⁾가 요구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³⁰⁾는 행정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법령상의 근거규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당해 규정의 입법적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제정안은 감독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조사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며, 특히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29)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0)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유사 입법례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³¹⁾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정안의 벌칙의 정도가 유사 입법례에 비하여 과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사 입법례의 수준에 맞게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임.

과태료 규정과 관련하여,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장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 부과는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금전벌로서, 공공기관의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는 입법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³²⁾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정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듯이 공공기관의 경우 역시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임.

31) 「전기안전관리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2)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808.

문 의 처
02)6788-5427